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2. 19 선고 2018가단270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2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대 653㎡ 및 D 전 29㎡ 지상, 별지 감정도(1) 표시 1, 2, 24, 25, 26, 22, 2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조립식건물 3㎡, 별지 감정도(2) 표시 2, 23, 24, 25, 26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(나) 부분 담장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승훈

별지